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
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8818호, 2022. 2. 3. 공포, 2022. 2. 2. 시행)됨에 따라, 개정 법률안의 신설·변경 조항에 맞춰 시행규칙 기존 조항을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령 일부조항을 개정

- 1) 제4조제2항, 제17조제1호, 제20조, 제30조제2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2. 00. ~ 3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법 제5조제6항”을 “법 제5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호 중 “(법 제11조”를 “(법 제1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(법 제11조”를 “(법 제1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법 제5조제6항”을 “법 제5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다목 중 “법 제12조제3항”을 “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) ① (생 략)	제4조(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는 액화석유가스 저장 소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 치하는 경우(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가 <u>법 제5조제6항</u>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와 「선박안전법」을 적용받는 선 박 안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5조제7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	
제17조(정기검사의 면제) 법 제37 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.	제17조(정기검사의 면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
1.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	1. -----			

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(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관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

2. 3. (생략)

제20조(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) 허가관청, 등록관청(법 제11조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,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30조(보험의 종류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

-----(법 제11조제1
항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) -----
--(법 제11조제1항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보험의 종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 법 제5조제7항-----

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 소가 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~ ⑤ (생략)	----- -----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4] <u>과태료의 부과기준</u> 1. (생략) 2. 개별기준 (단위: 만원) <table><tr>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<th rowspan="2">근거 법조문</th><th colspan="3">과태료 금액</th></tr><tr><th>1차 위반</th><th>2차 위반</th><th>3차 위반</th></tr><tr><td>가. 나. (생략)</td><td>(생략)</td><td>(생</td><td></td><td>략)</td></tr><tr><td>다. 액화석유가스 사업 자등의 지위를 승계 한 자가 법 제12조제 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td><td>법 제73 조제3 항제3호</td><td>150</td><td>220</td><td>300</td></tr><tr><td>라. ~ 포 (생략)</td><td>(생략)</td><td>(생</td><td></td><td>략)</td></tr></table>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가. 나. (생략)	(생략)	(생		략)	다. 액화석유가스 사업 자등의 지위를 승계 한 자가 법 제12조제 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 조제3 항제3호	150	220	300	라. ~ 포 (생략)	(생략)	(생		략)	[별표 4] <u>과태료의 부과기준</u> 1. (현행과 같음) 2. 개별기준 (단위: 만원) <table><tr>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<th rowspan="2">근거 법조문</th><th colspan="3">과태료 금액</th></tr><tr><th>1차 위반</th><th>2차 위반</th><th>3차 위반</th></tr><tr><td>가. 나. 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</td><td>과</td><td>같음)</td></tr><tr><td>다. ----- ----- -----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-----</td><td>----- ----- -----</td><td>----- ----- -----</td><td>----- ----- -----</td><td>----- ----- -----</td></tr><tr><td>라. ~ 포 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(현행</td><td>과</td><td>같음)</td></tr></table>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가. 나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	과	같음)	다. ----- ----- -----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-----	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	라. ~ 포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	과	같음)
위반행위		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차 위반	2차 위반		3차 위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나. (생략)	(생략)	(생		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액화석유가스 사업 자등의 지위를 승계 한 자가 법 제12조제 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 조제3 항제3호	150	22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~ 포 (생략)	(생략)	(생		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나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	과	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----- ----- -----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-----	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~ 포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	과	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35